◈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 ◈

○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
○ 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의원님으로 부터 기존 기금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

○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다시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
○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, 검토의견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.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

○ 2006년 1월 1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 ·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「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가 설치가 의무화되고

○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.

□ 주요골자

○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할 사항을 정함

(안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)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 ·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5. 기금의 신설 · 통합 ·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○ 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토록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구성)

○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, 성과분석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4조 회의)

○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)

○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6조 위원의 임기)

○ 시장은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,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함
(안 제7조 위원의 해촉 및 보궐 위촉)

○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함(안 제8조 간사 및 서기)

○ 심의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함
(안 제9조 의견청취)

○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 수당 등)

【 검토결과 】

○ 본 조례는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3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○ 2006년 1월 1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 ·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「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설치가 의무화되고

○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.

○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시 기금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, 균형 있는 기금의 운영 및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】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】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